

의안번호	2218464
의 퇴 인	박정하의원
회 답 일	2026. 6. 22.
추계번호	26C2284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제3항(미술작품의 설치 절차·방법)	시·도지사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(제3항) 제3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함(제4항)	재량규정
2	안 제9조의5(미술작품 유지·관리비용의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총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유지·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, 이 경우 건축주가 적립한 유지관리 총당금 금액을 한도로 하되, 건축주가 유지·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달리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제3항(미술작품의 설치 절차·방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의5(미술작품 유지·관리비용의 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미술작품의 가치 재평가(안 제9조의2제3항)

- 개정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미술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재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서는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관리실태 점검 결과 재평가 대상이 되는 미술작품 수 등을 현시점에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2025년 말 기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현황 자료는 다음과 같음

【표】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현황 자료(각 지자체 제출)

(단위: 건, 백만원)

지역구분	서울	경기	부산	인천	강원	대전
설치건수(A)	29	246	65	88	30	26
작품가액(B)	4,847	41,692	9,844	17,284	5,071	5,188
평균가액(A/B)	167	169	151	196	169	200
지역구분	서울	경기	부산	인천	강원	대전
설치건수(A)	12	16	1	43	54	21
작품가액(B)	2,361	1,734	290	6,346	10,778	2,238
평균가액(A/B)	197	108	290	148	200	107
지역구분	서울	경기	부산	인천	강원	대전
설치건수(A)	17	37	17	51	2	755
작품가액(B)	2,322	5,530	2,757	9,495	51	127,828
평균가액(A/B)	137	149	162	186	26	169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□ 미술작품 유지·관리비용의 지원(안 제9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유지·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별 건축주의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여부를 알 수 없고,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